

아틀리에 933'  
일반공급 서류안내

▣ 구비서류 Check

구분	해당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Check
필수 서류	무주택서약서	- 건본주택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
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- 건본주택 비치,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	<input type="checkbox"/>
	배정기준표	- 건본주택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
	신분증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	<input type="checkbox"/>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- 본인발급 인감증명서,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(본인사실서명확인서 대체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출입국사실증명원	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(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)	<input type="checkbox"/>
	해당자	(10년이상)장기복무군인 확인서	- 10년이상 복무 증빙 서류
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	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출입국사실증명원 (피부양 직계존속)		-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
출입국사실증명원 (피부양 직계비속)		-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
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속)		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
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비속)		-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
가족관계증명서 (피부양 직계존속)		-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		-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	<input type="checkbox"/>
혼인관계증명서		-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본인, 상세) -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자녀, 상세)	<input type="checkbox"/>
주택공급 신청서		-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
대리인 신청서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		
	인감증명서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청약 신청자), ※ 본인 발급용	<input type="checkbox"/>
	위임장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
해당자만 ✓체크	대리인 신분증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	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위 필수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('23.11.24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건본주택에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  
 ※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.  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